

創立 10 周年에 불여

韓國環境法學會가 創立된지 어언 10周年이 되었다. “10年이면 江山이 변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요사이처럼 變化의 속도가 빠르고 보면江山이 변하는데 10年씩이나 기다릴 것이 없으리만큼 우리의 周邊事情의 변화가 잦아졌으며, 그처럼 빨리 변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生活環境이 빠질 수 없음은 물론이다. 韓國環境法學會가 창립되어 10年을 지나는 사이에 벌써 두 차례의 憲法改正을 겪었고, 새 憲法 제35조 제2항에서는 明示的으로 環境‘權’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環境問題의 심각성을 들통보이게 하고 있다.

10年전의 創立 이래 韓國環境法學會도 우리 나라의 많은 學會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活動을 계속하여 음으로써 이제는 제법 그 基盤이 굳어졌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님바, 이는 오로지 會員 모두의 協力과 努力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꾸준히 계속하여 온 環境問題에 관한 學術的研究와 發表 및 研究成果를 종합한 學會誌 ‘環境法研究’의 발행을 통하여 環境法의 發展과 環境政策의 向上에 크게 寄與한 것은 우리 學會의 業績으로 내세울 만한 일이다. 특히, 여러 어려움 때문에 學會誌의 발간이 순조롭지 못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創立 이래 每年 꾸준히 ‘環境法研究’誌가 발행되어, 이제 그 제9집을 내기에 이른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會誌의 발간을 위하여 특히 애써온 具然昌 및 李相教 양 教授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10周年的 고비를 넘어선 韓國環境法學會는 定着期를 거쳐 이제 成長期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研究活動과 그

8 創立 10 周年에 붙여

成 果의 발표를 도모함과 동시에 會員 상호간의 돈독한 침묵을 다짐으로
써 環境法學의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아무쪼록
우리의 環境法學會가 10周年을 거듭 되풀이 하면서 무궁하게 발전되기
를 祀願할 뿐이다.

1988년 4월

名譽會長

李 尚 圭